

주문서

(주문번호 : 4505685533)

발주일자 : 2024-09-04

공 급 자 : (주)에스에프에이

발 주 자 : 삼성전기(주)

대 표 이 사 : 김영민

대 표 이 사 : 장덕현

주 소 : 경기도 화성시 38 (영전동)

주 소 :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영로 150 (대인동)

Duckyeon Chang
SAMSUNG ELECTRO-MECHANICS CO., LTD.

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물품을 발주하오니 납기내 제작(조달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1. 발주내용 :

NO	설비코드	품명 및 규격	수량	화폐	단가	금액	납기	견적번호
00010	E2302041405	버닝기(RVST)	1 SET	KRW	2,825,000,000	2,825,000,000	2025-02-28	QR2408E01001
합 계(VAT 별도)					KRW	2,825,000,000		

2. 구매 담당자 : 설비구매G 임주연 (Tel : +82-31-210-3742 e-Mail : juyeon0724.lim@samsung.com)

3. 납품 장소 : 경기 수원시 영통구 대영로 150번 삼성전기(주) 수원사업장
가공설비1G 납인석 (전화 : +82-31-210-6145 e-Mail : inseok.nam@samsung.com)

4. 대금지불조건 : 선금(10%), 중도금(70%), 잔금(20%)
대금지불조건에 의한, 매월 10일 마감(20일 지급), 20일 마감(30일 지급), 말일 마감(익월 10일 지급)
※ 현금지급 (중소·중견 기업)

5. 하자 보증 : 1YEAR (하자보증보험증권 10% 당사 예치)

6. 발주조건 :

제 1 항) 본 발주물품에 대한 중도금 세금계산서는 본 발주물품의 (발주자) 입고 품의가 완료된 후에 발행되며, 본 발주물품에 대한 잔금 세금계산서는 본 발주물품의 검수 합격증을 조건으로 발행된다.

제 2 항) (공급자)가 납기를 지연한 경우, (공급자)는 지연일수 1 일당 계약금액의 3/1,000 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(발주자)에게 배상하여야 하며, 본 발주물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한도는 본 주문서 상의 총 대금(발주금액)의 10%로 한다.

제 3 항) (발주자)는 1) (공급자)가 본 발주물품의 납기를 위반한 경우 또는 2) 납품된 물건이 본 주문서 및 양 당사자 간에 별도 합의로 정하여진 제작사양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, 본 주문서 상의 발주를 취소할 수 있다.

제 4 항) 본 발주물품의 검수는 (발주자)가 정하는 검수인이 (발주자)가 정하는 장소에서 (발주자)가 제출하는 검수규격에 의하여 실시한다.

제 5 항) (공급자)는 본 주문서 및 관련 계약 상의 권리(대금 채권 포함)의무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.

제 6 항) (공급자)는 본 발주물품 제작사양 변경 발생시 (발주자)의 구매부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승인이 없이 임의로 제작사양을 변경하여 제작을 진행할 경우 (발주자)는 (공급자)에게 대금지불을 보류할 수 있다.

제 7 항) 기타 거래조건은 설비 거래기본계약서에 따르며,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상관례에 의거하여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.

제 8 항) 설비거래기본계약서 제 3 조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본 주문서 상의 발주금액은 (발주자)와 (공급자) 합의에 의하여 예상 관세환급금액 상당액을 포함하여 산정된 금액임을 확인한다. 따라서 본 발주물품이 법령상 정한 관세 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, (발주자)가 관세를 환급할 권리를 가지며, (공급자)는 필요 시 관세 환급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이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.

제 9 항) 본 발주물품이 법령상 정한 관세 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(예: (발주자)가 계약제품을 외국으로 재수출하기 위하여 발주하는 경우 등), (공급자)는 본 발주물품 납품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관세환급에 필요한 모든 증빙서류(예: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분할증명서 등)를 제공하여야 하며, 위 증빙서류 제공의무는 중도금(중도금이 없는 경우 잔금)지급 조건으로 한다. 본 항에 의한 증빙서류 상의 양도일자는 본 발주물품의 실제 납품일자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한다.

제 10 항) (공급자)는 본 발주물품에 대한 중도금(중도금이 없는 경우 잔금, 이하 같음) 신청 시 (발주자)가 운영하는 발주 관련 시스템에, 관세청으로부터 부여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분할증명서의 접수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며, 미입력 시 중도금 신청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.

제 11 항) (공급자)가 본 주문서 제 8 항, 제 9 항, 제 10 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(발주자)가 본 발주물품에 대한 관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, (공급자)는 (발주자)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7. 전락물자 안내 :

(공급자)는 공급하는 제품이나 부품이 대외무역법상 전락물자에 해당하거나 기타 그 제조, 수입, 수출에 관련 법령상 제한이 있는 경우, 해당 제품/부품의 납품 전에 (발주자)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.